

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(제76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해당 제재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을 늘릴 수 있다.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.
- 나.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가 위반한 여러 개의 행위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제2호에 규정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한기준 중 제한기간을 가장 길게 규정한 제한기준에 따른다.
- 다.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제재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으며, 위반의 정도가 현저히 경미한 경우에는 줄인 후의 제재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추가로 줄일 수 있다. 다만,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재기간을 줄여서는 안 된다.
- 라. 다목에 따라 제재기간을 줄이는 경우 줄인 후의 제재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.
- 마. 각 중앙관서의 장이 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후 그 처분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, 만일 그 처분 전에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면 당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처분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당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만큼 추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2. 개별기준

|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재기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.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·감리를 한 자 |      |
| 가.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년   |
| 나.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                   | 1년   |
| 다.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                    | 8개월  |
| 라.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                    | 6개월  |
| 마.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                     | 4개월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바. 부실별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개월 |
| 2.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가. 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1)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년  |
| 2)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년  |
| 3)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개월 |
| 4)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개월 |
| 나. 물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1)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년  |
| 2)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년  |
| 3)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개월 |
| 4)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개월 |
| 3.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가. 설계서(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,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(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한 자 | 1년  |
| 나.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개월 |
| 다. 가목의 부당한 시공과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개월 |
| 4.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가.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년  |
| 나. 담합을 주도한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년  |
| 다.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,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낙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               | 6개월 |
| 5.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가.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년  |
| 나.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개월 |
| 다. 면허·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개월 |
| 라.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개월 |
| 마. 재하도급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개월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바.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개월               |
| 6.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(사기,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·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·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가. 국가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년                |
| 나. 국가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년                |
| 다. 국가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개월               |
| 라. 국가에 1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개월               |
| 7. 법 제2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가.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각 호의<br>기준에 의함 |
| 나.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<br>제한 요청이 있는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개월               |
| 8.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가.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년                |
| 나.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년                |
| 다.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개월               |
| 라.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개월               |
| 9. 영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(계약을 이행할 때에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8조, 제39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를 발생시킨 자)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가.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년                |
| 나.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년 6개월            |
| 다.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년                |
| 10. 영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가. 입찰에 관한 서류(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에<br>관한 서류를 포함한다)를 위조·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여<br>낙찰을 받은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| 1년                |
| 나.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(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<br>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)를 위조·변조하거나 부정하게<br>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         | 6개월               |
| 11. 영 제76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(고의로 무효의 입찰을<br>한 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개월               |
| 12. 영 제76조제2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(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<br>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개월               |
| 13. 영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가.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(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)하지 않은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개월 |
| 나.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1)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개월 |
| 2) 시공에는 참여했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가) 공동수급협정에 따라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 및 발주자의 동의로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된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개월 |
| 나) 공동수급협정에 따라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 및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한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개월 |
| 다. 계약상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개월 |
| 라.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로서 해당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개월 |
| 마.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1)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개월 |
| 2) 하도급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개월 |
| 14. 영 제76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가. 고의에 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개월 |
| 나.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개월 |
| 15. 영 제76조제2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자(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개월 |
| 16. 영 제76조제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자(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시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) | 8개월 |
| 17. 영 제76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가.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근로자 외의 공중에게 생명·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년  |
| 나.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근로자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개월 |
| 18. 영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(「전자정부법」 제2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·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 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가.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개월 |
| 나.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개월 |
| 19. 영 제76조제2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자(「전자정부법」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(이하 이 호에서 “정보시스템등”이라 한다)의 구축 및 유지·보수 등 해당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정보시스템등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등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한 자) | 2년  |

#### 비고

1. 위 표에서 “부실벌점”이란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벌점을 말한다.
2. 위 표에서 “하자비율”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.
3. 위 표에서 “보수비율”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.